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3-010-108호

안 거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3. 6. 14.

주 문

-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 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0,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 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8. 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2. 27. ~ '23. 4. 27.)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3. 4. 18. 기준으로 이용자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 정보			
합 계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1. 8. 9.	13:50	검색엔진(구글)에서 특정 아이디와 이름 검색 시 회원 정보가 노출되는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고객 문의 접수
'21. 8. 9.	14:10	검색엔진에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됨을 인지(인지 시점)
'21. 8. 9.	14:52	노출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페이지 파일 삭제 등 조치 완료
'21. 8. 9.	16:30	개인정보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21. 8. 11.	14:20	개인정보 유출 통지(6,848명)
'21. 8. 12.	-	유출 통지문을 홈페이지에 게시

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66,702명의 아이디,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21. 8. 1. 회원 검색기능 추가 등 관리자 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로직을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원 검색페이지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여 검색엔진에서 특정 아이디와 이름 검색시 회원 정보가 노출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8. 1. 회원 검색 기능 추가 등 관리자 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로직을 누락한 채 소스코드를 배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해당 소스코드 배포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 10. 12.부터 '23. 2. 8.까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8. 9.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21. 8. 11.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제외한 회원 6,848명에게만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다.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5. 8. 18.부터 '23. 6. 14. 심의종결일까지 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5. 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5.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관리자 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로직을 누락한 채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해당 소스코드 배포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4항·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일부 이용자(6,848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1년 이상 서비스 미사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보호법 §29	§48의2①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고시§4④) •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⑨)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보호법 §39의4①	§48조의4	•유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위반	보호법 §39의6①	§48조의5①	•1년의 기간 동안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 · 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 균
관련 매출액*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 ('20.10.12.~'23.2.8.)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천원 (중대한 위반)	① 기준금액 50% 가중 (장기 위반: 천원) ② 기준금액 50% 감경 (최초 위반: 천원)	필수적 가중·감경 거친 금액의 20% 감경 (천원)	천원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제6호·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같은 법 제39조의4 제1항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으로 각각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마.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도. 법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가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각각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및 '소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소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류	산출내역	>
•	쁘네쬬	가늘네ㅋ	_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안전조치의무 (접근통제)	600만 원	60	300만원	360만원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600만 원	60	300만원	360만원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600만 원	60	300만원	360만원
	1,080만원			

4.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	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360만원
1		법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2023. 6. 14.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360만원
		법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위반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360만원

2023년 6월 14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5호,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제6호·제12호의3,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6월 14일

위 원	년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	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지성우 (서명)